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월간 뉴스레터

2017년 6월호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Contents

회계정보

- 2018년 시행 신수익기준 내용 및 정착지원활동 안내
- 기업회계기준서 도입 자문용역 의뢰 및 수행시 유의사항
-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7- 1.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제정 공개초안
- 새로운 리스 기준서(IFRS16)
-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제정

세무정보

-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 5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 한국- 케냐 조세조약 공포
- 한국- 모리셔스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공포
- 최신 세우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Horwath Internation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전화번호 : 02-316-6659(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2018년 시행 신수익기준 내용 및 정착지원활동 안내 (금융감독원)
신기준
적용배경과
정착지원활동
(1) 개요

가. 신기준 적용 배경

2014년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현행 수익회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대체하는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제정하였습니다. IASB와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는 종전 규정의 비 일관성과 취약점을 없애고 수익 정보를 충실히 공시하도록 하기 위해 2002년부터 기준 합치를 위한 공동프로젝트를 시작하여 광범위한 거래와 산업에 적용되는 하나의 통합된 수익 기준서를 개발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2015년11월 K-IFRS 제1115호(이하 ‘신수익기준’)가 제정되었으며 상장기업 등은 2018년부터 이를 도입해야 합니다.

나. 신수익기준서 정착지원활동


(2) 주요내용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 적용되는 새로운 수익인식모형을 제시

신수익기준서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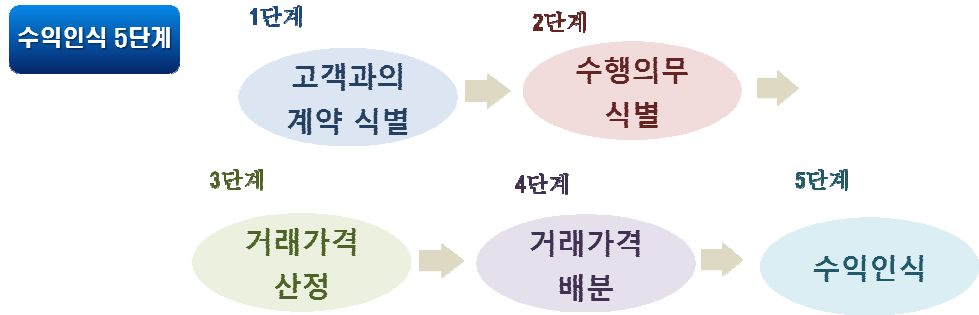
가. 현행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복잡하거나 진화하는 거래에는 적용하기 어려움

*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

나. 개정내용

고객과의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되는 5 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하여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수익인식의 일관성 제고



1,2 단계
: 인식¹⁾ 원칙

3,4 단계
: 측정²⁾ 원칙

5 단계
: 인식¹⁾ 원칙

주: 1) 인식(recognition):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
2) 측정(measurement):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

신수익기준
업종별
예상효과

(3) 업종별 예상 효과

가. 건설·조선업

신수익기준의 진행기준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수익인식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

나. 자동차

판매금액 중 일부 보증 관련금액은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증기간 등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가능성

다. 통신업

현행 기준은 휴대폰 판매와 통신서비스 제공 청구 금액에 따라 기간별 수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새로운 회계처리는 각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기간별 수익이 동일

* 제약, 유통 등 여타 업종에서도 신수익기준 도입 영향이 있을 수 있음

(4) 향후 계획

가. 회계이슈 신속 파악

2017년 5월~6월 중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업들의 준비상태 및 주요 회계이슈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발굴된 이슈는 정착지원 T/F 등에서 논의하여 대응방안 마련

* 조선, 제약, 통신, 유통 등 주요 업종별 간담회 실시 예정

신수익기준
적용관련
향후계획

나. 정착지원 T/F 회의 활성화 및 논의결과 전파

이슈의 양과 내용을 고려하여 필요 시 회의 횟수를 늘리고, 향후 논의할 안건과 일시를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도 참관(비공개 사항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

다. 도입 준비상황 및 주요영향에 대한 주석공시 점검

- ①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등이 신수익기준 도입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 (2017년 1월)
- ② 신수익기준 도입 준비상황 및 영향에 대한 주석공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 시 감리업무 등에 반영

라. 설명회 개최 등 신수익기준 교육·홍보활동 강화

상장법인, 감사인 등에 대하여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신기준서 내용 및 도입준비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2017년 하반기에는 신수익기준 내용 및 실무영향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서울, 대전 등 주요도시) 등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

* 상장협, 코스닥협,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신수익기준
공시 관련 내용**
(5) 수익 관련 질적·양적 공시 강화

재무제표 이용자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아래 질적·양적 정보를 공시

대분류	중분류	공시요구사항
(1) 고객과의 계약	① 고객과의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식한 수익 ▪수취채권, 계약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② 수익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을 범주별로 구분 ▪위 범주별 정보와 보고부문별 수익정보의 관계
	③ 계약 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취채권, 계약자산, 계약부채의 기초, 기말 잔액 ▪기초 계약부채 잔액 중 당기 인식 수익 ▪과거 보고기간에 이행한 수행의무에 대해 당기 인식한 수익 (예: 거래가격의 변동) ▪수행의무 이행시기가 일반적인 지급시기와 어떻게 관련되고 그 요소들이 계약자산, 부채 잔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당기에 생긴 계약자산, 부채 잔액의 유의적인 변동을 설명

	④ 수행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의무의 일반적 이행시기 ▪유의적인 지급조건 ▪이전하기로 약속한 재화·용역의 특성 ▪반품·환불의무, 이와 비슷한 의무 ▪보증의 유형과 이와 관련된 의무
	⑤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말 현재 이행되지 않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 총액 ▪위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 ※ 예상 존속기간이 1년 이내인 계약 등에는 실무적 간편법 (위 정보 미공시) 사용 가능
(2) 이 기준서를 적용하면서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그 판단의 변경	① 수행의무의 이행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수익인식에 사용한 방법과 그 방법이 재화·용역의 이전을 충실히 나타내는 이유를 설명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해, 약속한 재화·용역을 고객이 언제 통제하는지를 검토하면서 내린 유의적인 판단
	② 거래가격과 수행의무에 배분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모두에 대해 사용한 방법, 투입변수와 가정에 대한 정보 - 거래가격의 산정 - 변동대가 추정치가 제약되는지의 평가 - 거래가격의 배분 - 반환의무, 환불의무, 이와 비슷한 의무의 측정
(3)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이행하려고 들인 원가 중 자산으로 인식한 계약체결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원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나 계약이행원가를 산정하면서 내린 판단 ▪각 보고기간의 상각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이행하려고 들인 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의 기말 잔액을 주요 범주별[예: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 계약 전 원가(pre-contract costs), 준비원가]로 구분한 기말 잔액 ▪당기에 인식한 상각금액과 손상차손 금액 ▪실무적 간편법 사용 사실

**신수익기준
시행시기**
(6) 시행시기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조기적용 가능)

기업은 소급적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무적 간편법이나 누적효과 일괄조정외 경과조치를 사용할 수 있음

소급 대안		2017 년(비교 F/S)	2018 년	누적효과 반영
비교 F/S	완전소급 ¹⁾	K-IFRS 1115	K-IFRS 1115	'17. 1. 1.
소급	실무적 간편법 ²⁾	현행 기준/K-IFRS 1115		
누적효과 일괄조정 ³⁾		현행 기준		'18. 1. 1.

주: 1) 완전소급: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의 모든 계약을 소급하여 재무제표 재작성(문단 C3(1))

2) 실무적 간편법: 같은 회계연도에 개시되어 완료된 계약은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 등의 간편한 방법으로 소급 적용(문단 C5)

3) 누적효과 일괄조정: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의 이익잉여금 기초 잔액에 조정하여 인식, 계약변경에는 실무적 간편법 사용 가능(문단 C3(2), C7, C7A)

**신수익기준
주석 공시 내용**
(7) 주석공시내용(목차)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K-IFRS 제1115호 도입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참조

1. 중요한 회계정책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1.1 수행의무의 식별
1.1.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주문 제작 장비
1.1.3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1.1.4 변동대가
1.1.5 거래가격의 배분
1.1.6 계약체결 증분원가
1.1.7 보증
1.1.8 본인 대 대리인
1.1.9 라이선싱: 사용권
1.1.10 라이선싱: 접근권

(출처: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자료실, 회계감독 동향자료: 2017.05.08)

■ 기업회계기준서 도입 자문용역 의뢰 및 수행 시 유의사항
**감사인의
회계처리
자문용역 제공**
(1) 개요

가. 감사인의 회계처리 자문 용역 제공 금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대상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 자문용역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적용이 예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115호 등에 대한 기준서 도입 자문용역을 감사인이 수행할 경우,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기검토위험이 발생하는 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 하고 있는 회계처리 자문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 기준서 도입 자문용역의 재무제표 작성 관여 예시

- 기준서 영향분석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 및 관련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함으로써 재무제표 작성방향을 제시
- 회계정책 수립과정에서 도입예정 기준서 관련 회계처리방법 결정에 관여
- 업무·전산구축 지원과정에서 회계사건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절차를 제시하는 등 재무정보 체계 및 회계 근거기록 작성을 지원
- 공시정보 지원과정에서 주석을 포함한 공시 재무제표를 작성·검증

**기업회계기준서
도입
자문용역
유의사항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당해 연도(2017년)에 감사인이 기준서 도입 자문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① 자문대상 기준서는 차년도(2018년)부터 시행되어 당해 연도(2017년) 회사의 재무수치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나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현재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기준서 시행 전후와 상관없이 법 위반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고
 - 당해 연도(2017년) 재무제표 주석에 신규도입 기준서 영향 등을 기재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자기검토위험도 존재
- ② 따라서, 당해 연도(2017년)에 감사인이 신규도입 기준서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나. 기준서 도입 자문용역 수행 법인이 도입 첫해(2018년)에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및 수행할 수 없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여부

- ① 기준서 도입 첫 해(2018년) 재무제표는 회계법인의 자문대상에 직접 해당하여, 자문용역 수행 법인이 기준서 도입 첫 해 감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기검토위험이 발생하므로
 - 기준서 도입 자문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은 기준서 도입 첫 해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② 한편, 기준서 도입 첫 해(2018년) 다른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면 그 이후 재무제표는 더 이상 용역의 결과로 보지 않을 수 있어, 기준서 도입 두 번째 해(2019년)부터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공인회계사법에서 이해관계가 있었던 회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종결된 이후 1년간 감사업무 수임을 금지

(출처: 금융감독원 공문, 관리번호 감2017-33002: 2017.05.19)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7- 1.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제정
 공개초안

**회계감사 실무
 지침
 2017- 1
 공개초안 개요**

(1) 개요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7- 1.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8일에 제정 공개초안을 결의하였습니다.

동 실무지침 공개초안은 감사인이 변경되고 중요한 전기오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당기 감사인, 회사, 전임감사인 간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용대상, 전기오류사항 발견 시 당기 및 전임 감사인이 수행하는 절차, 3자간 커뮤니케이션, 전기오류수정과 관련된 당기 및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 문서화 등을 다루고 있으며, 2017년 12월 15일 이후 최초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이 실무지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사에 적용한다.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7- 1
 공개초안
 주요내용 요약**

나. 전기오류사항 발견 시 당기 감사인이 수행하는 절차

당기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기오류수정사항을 발견 한 경우 이 실무지침에 따라 수행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회사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실시
- 전임 감사인에게 중요한 전기오류사항 발견사실을 통지하도록 경영진에 요청
- 만약, 경영진이 전임 감사인에 대한 통지요청을 거절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당기 감사인이 직접 전임 감사인에게 통지
- 당기 감사인이 결론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전임 감사인에게 충분히 제공
- 전임 감사인이 전기오류사항의 수정과 관련하여 당기 감사인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 전기조서의 열람 및 검토
- 당기 감사인 – 경영진 및 지배지구 – 전임감사인의 3자간 커뮤니케이션 실시

다. 전기오류수정사항 발견 시 전임 감사인이 수행하는 절차

전기오류수정사항 발견 시 이 실무지침에 따라 전임 감사인이 수행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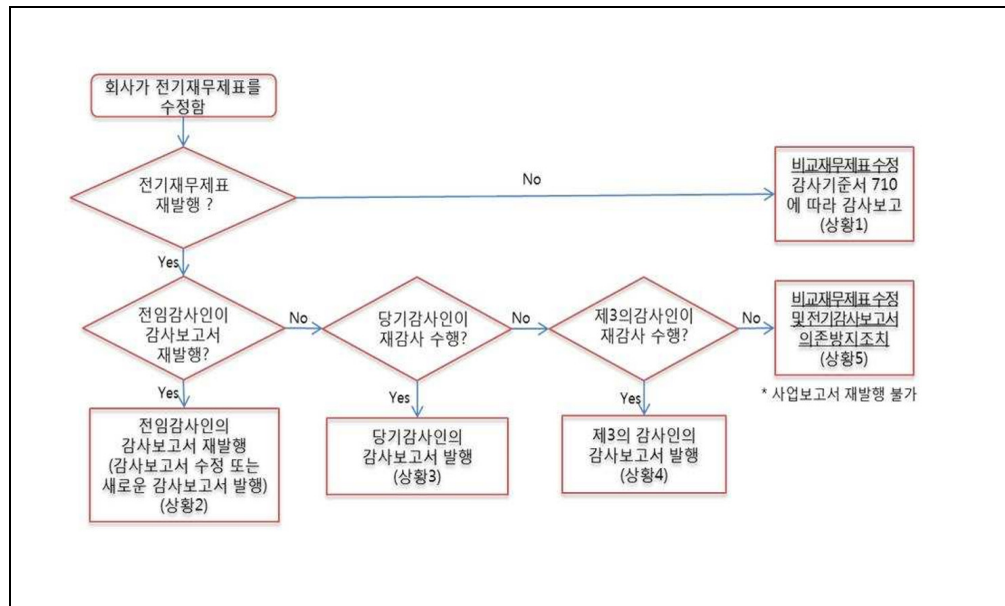
- 감사기준서 560(후속사건)의 요구사항에 따라 전기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 결정
- 동 결정 결과에 따라 경영진에게 통지하거나 당기 감사인에게 직접 전달
- 특히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당기 감사인의 전기조서 열람 요청에 협조

라. 전기오류수정과 관련된 당기 감사인과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

이 실무지침은 전기오류사항을 수정하는 방식을 전기재무제표 재발행 방식과 비교재무제표

수정 방식으로 구분하고, 전기 재무제표를 재발행하는 경우 재작성된 전기 재무제표를 누가 재감사 하는지에 따라 아래의 5가지 상황에 대해 당기 감사인과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다루고 있다.

- (상황1) 비교재무제표 수정
- (상황2) 전기재무제표 재발행 - 전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발행
- (상황3) 전기재무제표 재발행 - 당기 감사인의 전기재무제표 재감사
- (상황4) 전기재무제표 재발행 - 제3의 감사인이 전기재무제표 재감사
- (상황5) 전기재무제표 재발행 불가능 - 비교재무제표의 수정



마. 이 실무지침은 특히 전기오류사항을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하지 않고 비교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반영하고 당기 감사인이 해당 수정사항에 대한 추가감사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다음의 내용을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전기오류수정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 ① 전기오류수정의 성격과 영향(관련 주석내용을 언급함)
- ②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하여 당기 감사인이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

바. 적용시기

이 실무지침은 2017년 12월 15일 이후로 최초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KICPA전문정보, 감사: 2017.06.09)

새로운
리스기준서
제정경과

새로운 리스 기준서(IFRS 16)

(1) 제정경과

새로운 리스 회계기준 제정 프로젝트도 IASB와 FASB의 공동 프로젝트로 시작되었고, 토론회 발표(2009년), 공개초안 발표(2010년, 2013년)를 거쳐 16년 1월에 IFRS 16이 공표되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공개초안을 2016년 말에 발표하여 약 2개월간 외부의견을 수렴하였고, 2017년 5월 22일 제6회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2017년 상반기 중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리스기준서
주요내용과
영향

(2) 주요내용과 영향

가. 주요내용

현행 리스 기준서 IAS 17(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에 따르면 운용리스의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관련 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운용리스이용자인 기업'과 '자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기업'을 적절하게 비교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IASB는 IFRS 16을 제정하게 되었다. IFRS 16에 따르면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리스(일부 면제 규정 있음)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한편 IFRS 16에서도 현행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체계를 대부분 유지한다. 즉, **리스제공자는 여전히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에 따라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각각 다르게 회계처리한다.** 공개초안에서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회계처리의 비대칭성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를 바꾸는 비용이 정보이용자의 효익을 넘어선다는 우려가 있어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였다.

나. 영향

회계처리 비대칭성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으나, IFRS 16 의 도입으로 리스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리스이용자의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주는 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리스이용자의 모든 리스부채가 같은 방식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이 향상되고, 현행 기준서에 비하여 공시가 강화되어 모든 정보이용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 세부내용

①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리스이용자는 모든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을 기초로 최초 측정하고, 후속적으로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을 제외하고는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되 리스료에 생기는 변동 등을 반영하여 재측정한다. 현금흐름표에서 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지급액은 재무활동으로, 이자에 해당하는 지급액은 현금흐름표 기준서의 요구사항(영업활동, 재무활동)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② 리스의 식별

리스는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로 정의된다. 이 정의는 현행 기준서의 정의와 비슷하지만, 리스이용자는 모든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하므로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준서에서는 리스의 식별 규정을 구체화하였다. IASB는 약정이 리스인지를 판단할 때 IFRIC 4(K-IFRS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를 적용한 결과와 IFRS 16을 적용한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IFRIC 4에 따라 리스로 분류된 계약 중 소수가 IFRS 16에 따르면 용역 계약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리스료의 범위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 리스제공자의 리스순투자 측정의 기초가 되는 리스료의 범위도 일부 변경되었다. 예를 들면 현행 기준서에서는 조정리스료(기간경과 외의 변동요소의 미래 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가 최소리스료에서 제외되나, IFRS 16에서는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에 해당한다. 그리고 리스이용자의 경우 현행 기준서에서는 잔존가치보중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최소리스료에 포함하고 있으나, IFRS 16에 따르면 잔존가치보중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이러한 리스료에 포함된다.

④ 판매후리스 회계처리

판매후리스에서 그 거래가 판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IFRS 15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물론, IFRS 16을 적용할 때 판매후리스의 자산 이전을 판매로 판단하더라도, 이전되는 권리(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을 제외)에 관련되는 판매손익을 인식하고, 판매대가와 자산의 공정가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가 선급리스료의 지급인지, 추가 금융인지를 검토해야 하므로 보통의 자산 판매 회계처리와는 다를 수 있다. IFRS 16을 적용하면 리스이용자가 모든 리스에 관련 자산·부채를 인식하기 때문에 기존 판매후운용리스로 거래를 구조화 할 유인이 줄어들게 되었다.

⑤ 인식 면제 규정

IFRS 16을 적용하더라도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인식 면제 규정을 선택하여 현행 운용리스와 비슷하게 회계처리 할 수도 있다. 단기리스는 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를 말한다. 소액 기초자산 리스는 “새것일 때의 가치가 소액”인 리스를 말하며, 리스이용자의 규모·특성·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절대적 기준에 따라 리스자산이 소액인지를 평가한다.

(3) 시행일과 도입준비
**새로운
리스기준서
시행일과
도입준비**

가. 시행일
 새로운 리스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K-IFRS 제 1115 호를 적용하는 기업에 한하여 조기 적용이 허용된다. 운용리스이용자는 새로운 기준서를 K-IFRS 제 1008 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 적용하거나, 경과 규정에 따라 최초 적용일에 누적효과를 일괄 인식하는 방식으로 소급 적용할 수도 있다.

나. 도입준비

2016년 11월, 회계기준원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IFRS 16 적용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로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의 구분, 할인율 결정, 리스의 식별을 언급하였다. 기업은 강화된 공시와 리스 회계처리 변경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회계시스템과 내부통제제도의 개선이나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또 IFRS 16 도입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자료실, 회의자료, 기고자료: 2017.05.22, 2017.05.16)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

비영리조직회계 기준 공표

(1) 제정경과, 공표 및 시행일

제6회 회계기준위원회(2017년 5월 22일)에서 회계기준위원회 위원들은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사연구실이 제안한 내용에 동의하였으며, 이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8회 회계기준위원회(2017년 6월 23일)에서는 해당 비영리조직회계 기준을 제정하여 보고하였으며, 2017년 6월 중에 공표 및 시행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비영리조직회계 기준 주요내용

(2) 주요내용(일반기업회계기준과 비교)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요 차이는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회계기준의 목적	일반정보이용자가 재무상태, 운영성과 및 현금흐름과 경영자의 수탁책임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목적재무제표 작성기준을 제시(제 1 조)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일반기준 문단 1.1)
정보 이용자	기부자, 회원, 채권자 및 비영리조직에 자원을 제공하는 그 밖의 주체(제 5 조)	투자자, 채권자, 기타 정보이용자(경영자, 재무분석가, 신용평가기관, 조세당국, 감독·규제기관, 일반대중)(개념체계 문단 12)
재무보고의 목적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제 5 조) * 비영리조직이 제공한 서비스, 지속적 서비스 제공가능성 및 관리자의 관리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개념체계 문단 20) *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흐름 예측에 유용하고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
법적근거	없음* * 기준원 정관의 사업목적에 따라 정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제 13 조제 1 항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의 3

적용대상	법인격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비영리조직(제 2 조)	외감법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지 아니하는 기업(일반기준 문단 1.3)
재무제표	제 6 조 ① 재무상태표 ② 운영성과표* ③ 현금흐름표** ④ 주식 * 기업회계기준의 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가 융합된 형태를 취함 ** 수지계산서로 같음 가능	일반기준 문단 2.4 ① 재무상태표 ② 손익계산서 ③ 현금흐름표 ④ 자본변동표 ⑤ 주식
자본	자본 및 자본금의 개념이 없으며, 대신 순자산 개념을 사용(제 12 조)	자본은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주주지분)(개념체계 문단 104), 자본금은 주주들이 납입한 법정자본금(일반기준 문단 결 2.6)
순자산 구분	제 12 조, 제 21 조, 제 22 조 ① 제약없는 순자산 ② 제약있는 순자산* * 기부자나 법령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이 제약된 순자산으로서, 특정 비용을 집행하는 데에만 사용하거나, 투자자산에 투자하여 특정 기간 보유하거나, 경제적 내용연수가 유한한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그 내용연수 동안 보유·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일시계약) 또는 토지를 취득하여 영구적으로 보유하여 특정 목적에 사용하거나, 투자자산에 투자하여 영구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영구계약)	일반기준 문단 결 2.6 ① 자본금 ② 자본잉여금 ③ 자본조정 ④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⑤ 이익잉여금
구분경리	운영성과표 작성 시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으로 구분경리가 요구됨(제 26 조, 제 29 조)	기업 전체를 하나의 재무제표 단위로 하므로 구분경리가 요구되지 않음
정부보조금 수익인식	자산취득 관련 정부보조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업수익으로 표시(제 28 조) * 제약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약있는순자산'으로 표시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인식한 후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일반기준 문단 17.5), 수익관련 보조금은 당기수익으로 인식하되 특정비용 보전목적이면 해당 비용이 발생할 때 차감함(일반기준 문단 17.6)

사업(영업)비용의 표시방법	고유목적사업비용은 기능별로 구분한 비용을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고, 각 구분비용에 대해 다시 성격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를 주석 으로 기재(제 29 조)	영업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 표시(일반기준 문단 2.45) ① 매출원가 ② 판매관리비							
	<table border="1"> <tr> <td>기능별 비용 (운영성과표 본문)</td> <td>성격별 비용 (주석)</td> </tr> <tr> <td>① 사업수행비용</td> <td>① 인력비용</td> </tr> <tr> <td>② 일반관리비용</td> <td>② 시설비용</td> </tr> <tr> <td></td> <td>③ 기타비용</td> </tr> </table>	기능별 비용 (운영성과표 본문)	성격별 비용 (주석)	① 사업수행비용	① 인력비용	② 일반관리비용	② 시설비용		③ 기타비용
기능별 비용 (운영성과표 본문)	성격별 비용 (주석)								
① 사업수행비용	① 인력비용								
② 일반관리비용	② 시설비용								
	③ 기타비용								
회계정책의 결정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정책을 결정함(제 7 조)	일반기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 회계정책을 결정하는 경우 적용할 상세한 지침 제시(일반기준 제 5 장)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자료실, 회의자료 : 2017.06.23)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00

세 무 정 보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 5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17. 2. 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스포츠 교육기관: 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등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17. 7. 1.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주 요 내 용

○ 세법 개정으로 '17. 1. 1.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 중고자동차 중개 수수료·이전 수수료 등은 10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신차 구입 비용은 전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중고 자동차 관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구분>

거래 구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	소득공제 대상금액
신품 자동차 구입	X	N/A
중고 자동차 구입	○	구입 금액의 10%
중고 자동차 중개 수수료	○	수수료 금액의 100%
취득세, 공채, 인지대, 증지대	X	N/A

○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는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상 약 6 만 9 천 명이나,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므로 그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예) 운동용품 도매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업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임.

○ 국세청은 사업자(단체)에 안내문*, 홍보지 등을 발송하고 업종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제도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도매업자를 포함한 발급의무 추가 대상자 약 8 만 4 천 명에게 발송

2. 발급의무 위반시 불이익

○ 거래 건당 10 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 예) '17. 3. 2.에 개업한 사업자는 '17. 6. 30.까지 가입

○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 의무발행 업종 수입금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소비자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 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 년 내에 「우편·국세청 누리집·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 만 원, 연간 동일인 200 만 원

한-케냐조세조약 공포

2014년 7월 8일 서명되고, 2016년 9월 7일 국회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2017년 4월 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이 공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를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로 하고, 케냐의 경우에는 소득세로 함.
- (고정사업장) 건축현장이나 건설 또는 설치공사는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함.
- (배당 제한세율) 수익적 소유자가 회사(파트너십은 제외한다)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8%, 그 밖의모든 경우 배당 총액의 10%
- (이자 제한세율) 이자 총액의 12%
- (사용료 제한세율) 사용료 총액의 10%

한국-모리셔스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공포

2016년 8월 11일 서명되고, 2017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2017년 4월 1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협정”이 공포되었습니다.

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대상 조세에 관한 채약당사자의 국내법의 시행과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협조를 제공합니다. 그러한 정보에는 이 협정의 대상 조세의 결정, 부과 및 징수, 조세 채권의 추심 및 집행, 또는 조세사건의 수사 또는 소추와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가 포함됨. 여기서 조세란 모리셔스의 경우, 모리셔스 국세청장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 한국의 경우, 국세청 및 관세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를 말합니다.

또한, 동 협정은 해외세무조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한쪽 채약당사자는 다른 쪽 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그 한쪽 채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들어와 관련된 인들의 서면동의를 받아 개인들을 면담하고 기록을 조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허용되는 재조사 사유로서 '2 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완결적인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같은 잘못이 2 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는 물론, 하나의 행위가 그 자체로 완결적이지는 아니하더라도 그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의 원인이 되는 원칙이 결정되고, 이후에 2 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때에는,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 사유인 '2 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대법 2014 두 6562, 2017. 4. 27.).

■ 외국인투자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이 다른 사업과 함께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 소득의 산정방법

외국인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사업이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업과 함께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그 전체 매출액을 기초로 한 원가비례법 등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이를 산정할 수 있음(대법 2016 두 64043, 2017. 4. 13.).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59,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horwath.co.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